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10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6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6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8
※ 참고자료	14
1. 고문방지협약 개요	16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개요	17
3. UN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19
4.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21
5. 고문방지협약 (국문본)	23
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문본)	31

I. 제안 및 회부

가.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39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7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31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UN 고문방지협약)」은 전 분야에 걸쳐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이며,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는 「UN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고문예방기구의 구금 시설 방문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구금 시설 내 고문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1월 1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서명(발효일 1995년 2월 8일)하였지만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 7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여 「UN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UN 고문방지협약」은 제1조에서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고문’을 정의하고 있음.

「UN 고문방지협약」은 우리 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및 동법 제2항에 따른 고문 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협약임.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UN 고문방지협약」의 부속 문서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집단이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for Prevention of Torture, 이하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설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 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 이하 고문예방기구)”의 설립하거나, 지정·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고문예방기구(이하 예방기구)는 자신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 장소)를 이 의정서에 따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UN 고문방지협약」이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에 기반을 둔 예방적 성격의 비사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국내 이행기구의 권한을 보장하여 국내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하고자 비준을 권고함.

나아가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처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여,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 폭을 넓히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1월 19일에 「UN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한 이래 2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음.

이는 개인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았을 때에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UN 고문방지협약」을 형식적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UN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하 “고문방지협약”)¹⁾은 고문,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국제인권조약으로 1984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6월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하 “선택의정서”)²⁾가 2002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6년 6월 발효되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³⁾한 바 있음.

정부는 1995년 1월 9일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한 국내법과의 충돌 우려, 군사 기밀보호 등의 이

1) 참고자료 1. 고문방지협약 개요 참조

2) 참고자료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개요 참조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내역

연 번	날 짜	내 용
1	2006. 5.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2	2006.12.2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유4)로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비준은 유보해 오고 있음.

2024년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⁵⁾는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후, 대한민국에 선택의정서 가입·비준을 권고⁶⁾⁷⁾한 바 있음.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4)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46번 문단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내용 명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에 부여한 권한은 군사 기밀보호,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등 관련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비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에 따라 수립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38번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규정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내 구금 시설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한 바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는바,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5) 고문방지협약 제2장에 따라 설치. UN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함.

6) 참고자료 3. UN 고문방지위원회, 우리나라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참조

7)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 따라 총 4회에 걸쳐(3차~5차 통합 제출)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함. UN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2024. 7. 10. ~ 11.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24. 7. 26. 최종견해를 발표.

연번	차수	제출 시기	심의 시기
1	제1차 국가보고서	1996년 2월	1996년 11월
2	제2차 국가보고서	2004년 5월	2006년 5월
3	제3-5차 국가보고서	2016년 2월	2017년 5월
4	제6차 국가보고서	2021년 7월	2024년 7월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한 구금시설 방문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구금시설 내 고문 또는 불법적 처우 예방을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선택의정서는 국제적 및 국내적 감독기구가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는 이원적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UN 고문방지위원회 산하 ‘UN 고문방지소위원회(UN Sub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가 각 당사국을 방문하여 구금장소를 검열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 국내적으로는 당사국이 설립·지정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라는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고문 및 불법적 처우 방지를 위한 권고를 수행함.

선택의정서의 구금시설 감독 기능은 고문에 대한 예방에 목적이 있는 비사법적 수단으로, 당사국으로 하여금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기구의 수시방문을 의식하여 구금장소에 대한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도모함.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에 가입·비준하는 것은 국내 인권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구금시설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있으며,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계속 증가추세⁸⁾에 있음. 그 중 구금시설 진정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택의정서 가입·비준을 통해 국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해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조사권의 우리나라 상황에의 적용상의 문제,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등 제반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선택의정서는 구금시설의 위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UN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무제한적으로 제공하고, UN 고문방지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 등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는데, 군사기밀보호 관련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군사기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관련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¹⁰⁾하고 있어 특정시설이나 정보가 기밀로 분류될 경우 고문방지

8) 참고자료 4.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참조

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14조 1. 방지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가.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나.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다.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마.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2. 일시적으로 방문의 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문 예정지의 국가 방위·공공의 안전·자연 재해 또는 심각한 소요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만을 근거로 특정 구금 장소에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자체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주장될 수 없다.

소위원회의 조사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선택의정서 제15조¹¹⁾ 및 제21조¹²⁾에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나 국가예방기구에 정보를 제공한 자는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률, 군사기밀보호 관련 법률 및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과 충돌될 소지가 있음.

이에 선택의정서상의 조사권한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각종 군 시설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등 분단국가라는 특이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구금장소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독립적인 감독기구인 국가예방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예방기구는 선택의정서로부터 고문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한 권한과 보장을 부여받은 국내기구임.

정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선택의정서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독립 기구로부터 고문 및 가

10)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1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15조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방지소위원회 또는 그 대표단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시행·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21조 1.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국가예방기구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시행·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혹행위 관련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등 국가예방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 및 권한의 제약상 선택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국가예방기구를 대체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¹³⁾이 있음.

이에, 선택의정서에 비추어 현행 감독기구들을 평가하고, 독자적인 권한 및 전문성 확보 등과 더불어 국가예방기구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현행 기구를 국가예방기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마지막으로,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국내 공감대 및 제반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선택의정서 가입은 고문의 정의, 처벌 기준, 시효 등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요하고,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처 간 이견 등 인권 보호와 정치·사회적 상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 아래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고문방지 관련 결의에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¹⁴⁾하는 등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선택의정서 가입 문제 관련 국내법과의 충돌 우려

1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연구」, 최태현(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5.

14) 최근 유엔 내 고문방지 관련 채택 결의 (우리는 모두 공동제안국 참여, 컨센서스 동참)

▲ 2024년 제55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23년 제52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22년 제77차 유엔총회 결의
▲ 2021년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20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결의
▲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 ▲ 2017년 제34차 인권이사회 결의 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 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법무부는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여러 차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선택의정서의 비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으며,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즉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보다는 국내법에 마련된 메커니즘¹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국가인권위원회는 UN에서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하여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해 왔으며, 선택의정서 가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¹⁶⁾ 추진, 관련 토론회·간담회 개최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입장임.

한편, 동 결의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에 우리나라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참여국 수의 정정¹⁷⁾이 필요함.

15) 법무부는 국내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법무행정 구금시설의 방문조사,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등 예방 감독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함.

1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17) 문구 수정(안)

결의안의 문구	수정안
1995년 1월 1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서명	1995년 1월 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현재까지 전 세계 76개국 이 참여하고 있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현재까지 전 세계 94개국 이 참여하고 있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둘째, 선택의정서가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¹⁸⁾할 필요가 있음. 고문방지협약상 개인진정제도는 선택의정서가 아닌 고문방지협약 제22조¹⁹⁾에 규정되어 있음.

그밖에 위원회 및 기구의 영문명 등²⁰⁾ 경미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6

18) 문구 수정(안)

결의안의 문구(제안이유)	수정안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UN 고문방지협약」의 부속 문서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집단이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삭제)
이는 개인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았을 때에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삭제)

19) 「고문방지협약」

제22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의 통보,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보에 대하여는 이를 이 조에 따라 수리될 수 없는 통보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였으며 협약 규정을 위반한 혐의당사국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6월 안에 접수국은 사건의 내용과 스스로 취한 구제조치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해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관련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를 심리한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조에 따른 개인의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었거나 현재 심리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또는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6.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한다.(이하 생략)

20) 영문명 등 수정(안)

결의안의 문구	수정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for Prevention of Torture, 이하 고문방지소위원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이하 고문방지소위원회)
여러 개의 방문 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 이하 고문예방기구)	여러 개의 방문 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이하 국가예방기구)

참 고 자 료

1. 고문방지협약 개요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개요
3. UN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4.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 고문방지협약 (국문본)
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문본)

참고1

고문방지협약 개요

- (정식명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연혁) 1984. 12. 유엔 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1995. 1. 비준, 1995. 2. 발효

※ 2007. 11. 고문방지협약 제21조(국가 간 진정) 및 제22조(개인진정) 수락 선언

- (내용) 전문, 3부 33개조로 구성

가. 고문의 범죄화

- 고문의 정의(제1조)
- 고문행위의 범죄화 보장(제4조) 등

나. 고문 등 방지

-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 입법·행정·사법조치 의무(제2조)
- 고문방지 교육(제10조)
- 고문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제15조)
-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방지(제16조) 등

다. 고문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 고문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제3조)
- 고문 피해자 구제(제14조) 등

참고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 (연혁) 2002. 12. 유엔 총회에서 채택, 2006. 6. 발효
- (내용) 전문, 7부 37개조로 구성

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목적

- 고문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한 구금장소의 정기방문 제도를 확립하는 것임(제1조)

나. 방지소위원회 및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 산하에 10인으로 구성되는 방지소위원회를 설립(제5조)
-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의 구금장소를 방문하고, 당사국에게 권고를 하며, 국가예방기구 및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지역적 국가적 기구와 협력함(제11조)
-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의 자국 구금장소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자유박탈자와의 면담 기회 등을 제공하며, 방지소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함(제12조 내지 제14조)
- 방지소위원회는 권고사항과 의견을 비밀리에 당사국과 국가예방기구(적절한 경우)에 전달함(제16조)
-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음(제35조)

다. 국가예방기구의 정기조사

- 국내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예방기구를 하나 이상 유지·지정 또는 설립(제17조, 제18조)
- 국가예방기구는 구금장소의 정기조사, 권고, 법률 또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행함(제19조)
-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구금장소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자유박탈자와의 면담 기회 등을 제공함(제20조)
- 국가예방기구의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음(제35조)

라. 발효일 등

- 국가예방기구의 유지·지정 또는 설립 기한은 자국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입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임(제17조)
- 비준과 동시에 방지소위원회 및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최장 3년까지 연기하는 선언이 가능(제24조)
- 해당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제28조)

참고3

UN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 심의 일정 : 2024. 7. 10. 10-13시, 7. 11. 15-18시 (스위스 제네바)
- 최종견해 발표 : 2024. 7. 26. 유엔 홈페이지 게시
 - 고문방지위원회는 7. 26.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치, 북한이탈주민 보호, 고문 진정 메커니즘 포함 총 16개의 분야에서 의견 표명과 권고가 있었음.

[주요 내용]

<긍정적 평가>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우려 및 권고>

- 고문의 정의,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지체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 등 구금 초기부터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치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등 권한 강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인정하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 모든 구금시설에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 구축 및 피해자 구제 제공
- 법 집행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 대상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군대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젠더 기반 폭력 포함 모든 폭력 예방 및 근절, 고문 및 학대 혐의와 자살 등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조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고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비자의적 입원 절차 개선 노력을 인정하며, 절차적 보호장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개선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보장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추가된 것에 주목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 메커니즘 보장 및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권고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 및 처벌 관련 조항 개정 고려
-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보장, 부부강간죄 신설 고려
- 모든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수용 피해자의 보상·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보장

<후속 보고 요청 - 1년 이내 회신>

- 피구금자에 대한 기본적 법적 보호 장치 보장
- 구금시설 독방 금치 관행 및 법제 개선
-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군대 내 학대, 사망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관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

- 독립성, 다양성 및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할 것
- 위원 선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제고하는 입법 조치를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불시방문권,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사람과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

참고4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 찰		경 찰		국가 정보원		군		중앙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합 계	139,500	100.0	3,536	2.5	26,676	19.1	287	0.2	3,232	2.3	8,410	6.0	124	0.1	1,558	1.1	1,386	1.0
2023	8,929	100.0	76	0.9	1,519	17.0	10	0.1	395	4.4	706	7.9	5	0.1	64	0.7	33	0.4
2022	8,475	100.0	73	0.9	1,483	17.5	9	0.1	326	3.8	515	6.1	13	0.2	74	0.9	37	0.4
2021	7,431	100.0	97	1.3	1,259	16.9	12	0.2	239	3.2	511	6.9	10	0.1	92	1.2	38	0.5
2020	6,558	100.0	118	1.8	1,192	18.2	4	0.1	200	3.0	332	5.1	9	0.1	70	1.1	28	0.4
2019	6,986	100.0	146	2.1	1,320	18.9	10	0.1	190	2.7	447	6.4	4	0.1	85	1.2	28	0.4
2018	7,055	100.0	128	1.8	1,259	17.8	12	0.2	187	2.7	263	3.7	3	0.0	59	0.8	15	0.2
2017	9,132	100.0	219	2.4	1,543	16.9	12	0.1	251	2.7	451	4.9	10	0.1	102	1.1	30	0.3
2016	8,160	100.0	149	1.8	1,476	18.1	8	0.1	201	2.5	263	3.2	3	0.0	78	1.0	39	0.5
2015	8,499	100.0	151	1.8	1,361	16.0	3	0.0	123	1.4	261	3.1	8	0.1	58	0.7	90	1.1
2014	8,709	100.0	192	2.2	1,538	17.7	11	0.1	96	1.1	385	4.4	6	0.1	80	0.9	74	0.8
2013	7,458	100.0	156	2.1	1,325	17.8	16	0.2	96	1.3	294	3.9	5	0.1	81	1.1	65	0.9
2012	6,946	100.0	149	2.1	1,211	17.4	15	0.2	159	2.3	365	5.3	2	0.0	83	1.2	89	1.3
2011	5,425	100.0	137	2.5	1,098	20.2	16	0.3	117	2.2	476	8.8	3	0.1	74	1.4	73	1.3
2010	6,460	100.0	235	3.6	1,579	24.4	18	0.3	108	1.7	293	4.5	13	0.2	161	2.5	117	1.8
2009	5,282	100.0	144	2.7	1,200	22.7	16	0.3	90	1.7	174	3.3	6	0.1	55	1.0	203	3.8
2008	4,892	100.0	158	3.2	1,112	22.7	28	0.6	81	1.7	155	3.2	3	0.1	71	1.5	130	2.7
2007	5,067	100.0	224	4.4	1,128	22.3	37	0.7	76	1.5	200	3.9	8	0.2	65	1.3	151	3.0
2006	3,335	100.0	130	3.9	804	24.1	14	0.4	50	1.5	275	8.2	2	0.1	57	1.7	25	0.7
2005	4,199	100.0	217	5.2	979	23.3	11	0.3	59	1.4	346	8.2	3	0.1	64	1.5	31	0.7
2004	4,628	100.0	164	3.5	736	15.9	11	0.2	59	1.3	1,456	31.5	6	0.1	41	0.9	14	0.3
2003	3,041	100.0	180	5.9	724	23.8	4	0.1	56	1.8	113	3.7	2	0.1	17	0.6	16	0.5
2002	2,214	100.0	200	9.0	697	31.5	5	0.2	38	1.7	66	3.0	-	-	4	0.2	27	1.2
2001	619	100.0	93	15.0	133	21.5	5	0.8	35	5.7	63	10.2	-	-	23	3.7	33	5.3

(출처 :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04면)

(단위 : 건, %)

구 분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정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 관리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타	
합 계	6,137	4.4	3,725	2.7	9,393	6.7	39,078	28.0	32,444	23.3	1,349	1.0	426	0.3	496	0.4	1,243	0.9
2023	481	5.4	396	4.4	1,038	11.6	2,357	26.4	1,601	17.9	70	0.8	59	0.7	59	0.7	60	0.7
2022	512	6.0	377	4.4	1,179	13.9	2,130	25.1	1,392	16.4	118	1.4	77	0.9	71	0.8	89	1.0
2021	484	6.5	362	4.9	877	11.8	1,830	24.6	1,223	16.5	91	1.2	52	0.7	128	1.7	126	1.7
2020	392	6.0	276	4.2	535	8.2	1,715	26.2	1,426	21.7	57	0.9	59	0.9	65	1.0	80	1.2
2019	405	5.8	294	4.2	669	9.6	1,693	24.2	1,499	21.5	50	0.7	26	0.4	89	1.3	31	0.5
2018	273	3.9	208	2.9	584	8.3	1,827	25.9	2,091	29.6	67	0.9	11	0.2	33	0.5	35	0.5
2017	412	4.5	286	3.1	745	8.2	2,269	24.8	2,636	28.9	74	0.8	22	0.2	29	0.3	41	0.5
2016	264	3.2	205	2.5	611	7.5	1,632	20.0	3,068	37.6	83	1.0	26	0.3	4	0.0	50	0.6
2015	390	4.6	196	2.3	562	6.6	1,666	19.6	3,477	40.9	72	0.8	19	0.2	3	0.0	59	0.6
2014	308	3.5	239	2.7	532	6.1	1,633	18.8	3,432	39.4	56	0.6	24	0.3	7	0.1	96	1.0
2013	299	4.0	168	2.3	437	5.9	1,687	22.6	2,717	36.4	42	0.6	10	0.1	2	0.0	58	0.8
2012	285	4.1	132	1.9	500	7.2	1,729	24.9	2,096	30.2	40	0.6	10	0.1	2	0.0	79	1.1
2011	257	4.7	11	0.2	191	3.5	1,352	24.9	1,547	28.5	56	1.0	5	0.1	1	0.0	11	0.1
2010	249	3.9	13	0.2	281	4.3	1,880	29.1	1,368	21.2	101	1.6	4	0.1	1	0.0	39	0.6
2009	169	3.2	11	0.2	118	2.2	2,026	38.4	975	18.5	21	0.4	2	0.0	2	0.0	70	1.3
2008	202	4.1	10	0.2	147	3.0	1,936	39.6	674	13.8	51	1.0	5	0.1	-	-	129	2.7
2007	265	5.2	13	0.3	190	3.7	1,981	39.1	578	11.4	43	0.8	5	0.1	-	-	103	2.0
2006	133	4.0	53	1.6	64	1.9	1,406	42.2	251	7.5	59	1.8	-	-	-	-	12	0.4
2005	140	3.3	82	2.0	68	1.6	1,848	44.0	241	5.7	97	2.3	1	0.0	-	-	12	0.3
2004	87	1.9	45	1.0	47	1.0	1,774	38.3	122	2.6	49	1.1	5	0.1	-	-	12	0.3
2003	60	2.0	118	3.9	18	0.6	1,639	53.9	27	0.9	38	1.2	3	0.1	-	-	26	0.9
2002	29	1.3	132	6.0	-	-	986	44.5	2	0.1	13	0.6	1	0.0	-	-	14	0.6
2001	41	6.6	98	15.8	-	-	82	13.2	1	0.2	1	0.2	-	-	-	-	11	1.8

(출처 :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05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4. 12. 10. / 발효일 1987. 6. 26. || 대한민국 가입일 1995. 1. 9. / 적용일 1995. 2. 8.²¹⁾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목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

21) 동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은 2008년 1월 3일 발효됨(조약 제1878호).

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또는 자기 나라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실행된 경우
나. 범죄혐의자가 자기 나라의 국민인 경우

다. 피해자가 자기 나라의 국민이며 자기 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 소재하나 이러한 범죄혐의자를 제1항에 규정된 어느 국가에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입수된 정보를 검토한 후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즉시 범죄혐의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 또는 그 밖의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에 따르나, 형사절차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 지속될 수 있다.

2. 위의 조치를 취한 국가는 즉시 예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3. 제1항에 따라 구금된 개인은 가장 인근에 소재하는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4. 어느 국가가 이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그 개인의 구금사실 및 구금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즉시 통고한다.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조사결과를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신속히 통보하며, 관할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알린다.

제7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나, 제5조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2. 이러한 당국은 자기나라 법에 따라 통상적인 중범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 및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거의 수준은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증거의 수준만큼 엄격하여야 된다.

3. 제4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관련된 자는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 받는다.

제8조 1. 제4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 사이의 현행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 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당사국은 향후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러한 범죄를 인도 대상 범죄로 포함시킨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에 따른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위의 범죄를 그들 사이의 인도 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목적상 위의 범죄는 범죄 발생지에서는 물론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 국가의 영토에서도 실행된 것으로 취급된다.

제9조 1.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서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에는 당사국이 보유한 형사절차상 필요한 모든 증거의 제공이 포함된다.

2. 당사국은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사법공조 조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11조 고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1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권한 있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고소인과 증인이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14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피해자나 그 밖의 개인들이 국내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는 "고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밖의 형태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그 밖의 국제문서나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제17조 1. 다음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는 당사국이 선출하며,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및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 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 등의 위원 중 고문방지위원회에 재임하고자 하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유익하

다는 점을 유념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4. 최초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5명은 최초 선거 직후 제3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다른 전문가를 자기 나라 국민 중에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안을 당사국에 통지한 후 6주 안에 전체 당사국의 반 또는 그 이상이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지명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위원들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8조 1.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다만,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제1차 회의 이후 위원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5. 당사국은 당사국회의 및 위원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하며, 이러한 경비에는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 인건·바시·설비 등과 같은 제반경비로서 국제연합에 상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행한 의견제시를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견해와 함께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또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0조 1.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 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관련당사국과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에는 관련당사국의 영토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제시 및 제안과 함께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요청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 결과 요지를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위원회의 권능을 자기 나라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선언을 한 당사국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리되어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를 이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통보로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접수국은 통보접수 3월 안에 통보국에 대하여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그 밖의 해명서를 제공한다. 이 설명서나 해명서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내절차 및 이미 취해졌거나 계류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접수국이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월 안에 두 관련당사국 사이에 문제가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방 당사국에 대한 통고를 통해, 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시도되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이 조에 따라 회부된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당사국에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임시조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나후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후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리되는 동안 대표를 참석시킬 권리와 구두 및 서면 진술권을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후에 따른 통고 접수일부터 12월 안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 및 해결내용에 관한 약

술로 한정된다.

(2)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악술로 한정되며,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진술 및 구두진술 기록이 보고서에 첨부된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보고서는 관련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당사국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의 통보,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보에 대하여는 이를 이 조에 따라 수리될 수 없는 통보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였으며 협약 규정을 위반한 혐의당사국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6월 안에 접수국은 사건의 내용과 스스로 취한 구제조치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해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관련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를 심리한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조에 따른 개인의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었거나 현재 심리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또는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6.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21조 제1항 마호에 따라 임명되는 임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의 편의와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제24조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3 장

- 제25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2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27조 1. 이 협약은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28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언제든지 이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9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안이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다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과거에 수락한 이 협약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
- 제30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당사국 중 1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당사국이 중재재판 요청일로부터 6월 안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기 나라는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3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러한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탈퇴가 발효한 날 이후에 이러한 당사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서명·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및 제29조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31조에 따른 탈퇴

제33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2002. 12. 18. / 발효일 2006. 6. 22. || 대한민국 미가입

[전 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금지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구성함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며,
협약 제2조 및 제16조는 각 당사국에게 자국 관할하의 모든 영역 내에서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는 이러한 조항의 이행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가 분담하는 공동의 책임이며, 그리고 국제이행기구들은 국내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행정·사법 및 기타 조치들의 결합이 요구됨을 상기하고,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그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선언하였으며,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 제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에 기반을 둔 예방적 성격의 비사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원칙

-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 제2조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이하 “방지소위원회”라고 한다)가 설립되며, 이 의정서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국제연합 헌장의 체제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우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물론 국제연합의 규범을 따른다.
3. 방지소위원회는 또한 비밀유지·공정성·비선별성·보편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따른다.
4. 방지소위원회와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라고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또는 유지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신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 장소”라고 한다)를 이 의정서에 따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방문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처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2부 방지소위원회

제5조 1. 방지소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정서의 50번째 비준 또는 가입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25명으로 증원된다.

2.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법무행정 분야, 특히 형법, 교도행정 또는 경찰행정, 기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대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경력이 인정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다.

3. 방지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여러 형태의 문명과 당사국의 법제도의 대표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이 구성에 있어서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의거하여 균형적인 성별 대표성도 고려한다.

5.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6.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근무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방지소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합당한 후보자를 본조 제2항에 따라 2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피지명자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가. 피지명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2명의 후보자중 최소한 1명은 지명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당사국의 국민이 2명을 초과하여 지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민을 지명하기 전에 해당 당사국의 동의를 구하여 이를 얻어야 한다.

3. 늦어도 선거가 실시되는 당사국 회의의 5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3개월 내로 후보자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자의 명단을 그를 지명한 국가를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 1.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된다.

가. 이 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요건과 기준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최초의 선거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6월 이내에 실시된다;
다.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라. 방지소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로 최다 득표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2. 선거 과정에서 동일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2명이 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다수표를 받은 후보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그들이 동일한 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

차가 적용된다.

가. 그중 1인만이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나. 양 후보자 모두가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누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다. 후보자 누구도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자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제8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며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합당한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차기 당사국 회의까지 근무하도록 지명한다. 다만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안된 지명안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당사국에게 통보된지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이 반대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재지명 되는 경우 1회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들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제1항 라호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의 추천으로 결정된다.

제10조 1. 방지소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방지소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위원 재적 과반수가 의사정족수가 된다;

나. 방지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다. 방지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방지소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소집한다. 최초 회의 이후 방지소위원회는 절차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방지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동시에 회기를 갖는다.

제3부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제11조 1. 방지소위원회는:

가. 제4조에 규정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국에게 권고를 행한다;

나. 국가예방기구와 관련하여:

(1) 필요한 경우 이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당사국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2) 국가예방기구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접촉도 하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과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제도는 물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기관이나 기구와 전반적인 고문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방지소위원회를 자국의 영역으로 입국시키고, 이 의정서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로의 접근을 허용한다;

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필요사항과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지소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라.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제13조 1. 방지소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초청으로 당사국에 대한 정기 방문 계획을 수립한다.

2. 협의를 거친 후,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정된 방문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방문은 최소한 2명의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가 다루는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당사국·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 및 국제연합 국제범죄방지센터의 추천에 의하여 준비된 전문가 명부에서 선발된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은 5명을 초과하는 자국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사국은 특정 전문가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한다.

4.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기 방문 후에 단기간의 후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 1. 방지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가.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나.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다.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마.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2. 일시적으로 방문의 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문 예정지의 국가 방위·공공의 안전·자연 재해 또는 심각한 소요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만을 근거로 특정 구금 장소에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자체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방지소위원회 또는 그 대표단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시행·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1.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권고사항과 견해를 당사국에게 비공개로 통보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에게도 그렇게 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국의 논평과 함께 자신의 보고서를 출간한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3.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연례 공개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다.

4. 당사국이 방지소위원회에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거부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그 문제에 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부 국가예방기구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나 자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를 유지·지정 또는 설립한다. 지방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이 의정서의 조항에 부합되는 경우, 이 의정서 목적상의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될 수 있다.

- 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은 물론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역량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성별 균형과 그 국가 내 인종 집단과 소수자 집단이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 가.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대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대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제출하고, 국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한다;
- 다. 현행 법률이나 입법안에 관하여 제안이나 견해를 제출한다.

제20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 가.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나.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다.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
-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 마.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 바. 방지소위원회와 접촉하고, 이에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권리.

- 제21조 1.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국가예방기구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시행·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하여 수집된 비밀 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해당 당사국의 관할 당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

다.

제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를 출간하여 배포할 것을 약속한다.

제5부 선언

- 제24조 1. 당사국은 비준시 이 의정서의 제3부 또는 제4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연기는 최장 3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적절한 설명과 방지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고문방지위원회는 추가로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부 재정규정

- 제25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방지소위원회에 의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따른 방지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제26조 1. 당사국의 방문 후 방지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는 물론 국가예방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특별기금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2. 특별기금은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기타 사적 또는 공적 단체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제7부 최종규정

- 제27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사실을 통지한다.
- 제28조 1. 이 의정서는 스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29조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30조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31조 이 의정서의 조항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구금장소 방문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지소위원회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 권장된다.
- 제32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 협약과 1977년 6월 8일자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 속의 구금 장소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하도록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3조 1.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 의정서와 협정의 다른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그러한 폐기는 이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상황 그리고 방지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취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행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없으며, 또한 폐기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방지소위원회에 의하여 심리 중인 문제가 계속 심리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의 폐기의 발효일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가 그 국가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심리를 시작할 수 없다.

제34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를 자신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되면 이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그들이 이미 수락한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을 받는다.

제35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제36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사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 및 그들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가. 방문국가의 법령을 존중한다;

나. 그들 임무의 공평하고 국제적인 성격에 어긋나는 행동과 활동을 삼간다.

제37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